



제424회국회(임시회)
제2차 기획재정위원회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5375호)

2025. 4.

기 획 재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정지은

목 차

I . 개요	1
II . 주요 내용별 검토	2
1. ‘원본’ 개념에 전자화문서 포함(정부 제출)	2

I. 개요

1.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5375호)

가. 제안경위

- (1) 제 안 자 : 정부
- (2) 제 안 일 : 2024. 11. 8.
- (3) 회 부 일 : 2024. 11. 11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 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4항 및 제81조의10제6항).

II. 주요 내용별 검토

1. ‘원본’ 개념에 전자화문서 포함(정부 제출)

현 행	개 정 안
☐ 장부 등에 근거한 과세(제16조제4항) ☐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근거가 기재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<u>원본</u> 과 일치함을 확인하도록 함	☐ 장부 등에 근거한 과세 ☐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근거가 기재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<u>원본(전자화문서 포함)</u> 과 일치함을 확인하도록 함
☐ 장부 등의 보관금지(제81조의10제6항) ☐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, 그 사본이 <u>원본</u> 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	☐ 장부 등의 보관금지 ☐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, 그 사본이 <u>원본(전자화문서 포함)</u> 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

* 정부 2024. 11. 8. 제출(의안번호 5375)

☐ 개정안은 ①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, ② 납세자에게 일시보관 장부등을 반환할 때 세무공무원이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원본의 개념에 ‘전자화문서’를 포함하려는 것임.

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¹⁾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

1)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(전자문서의 보관)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.
 1.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

문서²⁾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한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, 예외적으로 ‘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’에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이 예외 사유에는 「상법」 제33조³⁾ 및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3제4항⁴⁾ 등이 해당하는데,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 등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된 원본 종이문서로 보관하

2. 전자문서의 작성자, 수신자 및 송신·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(이하 “전자화대상문서”라 한다)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(이하 “전자화문서”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.

1.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
2.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

2) “전자문서”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·변환되거나 송신·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), “전자화문서”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를 말함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제2항). 즉, 전자문서는 전자화문서를 포괄하는 개념임.

< 전자문서 구분 >

전자문서	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전자문서	-워드프로세서 파일 -전자우편, 카카오톡 메시지 등 -소프트웨어 -디지털콘텐츠(음원, 사진, 동영상 등)
	전자적 형태로 변환된 전자화문서	-종이문서를 스캔한 PDF파일 -종이문서를 촬영한 JPG파일 등

자료: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(2022)」,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법제처, p.6

3) 「상법」 제33조(상업장부등의 보존) ①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상법 시행령」 제3조(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)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(이하 이 조에서 “장부와 서류”라 한다)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(이하 이 조에서 “전산정보처리조직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보존하여야 한다.

4)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3(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)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. 다만, 계약서 등 위조·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5조의7(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)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.

1. 「상법 시행령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
2. 등기·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
3.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·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. 다만,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.
4. 인가·허가와 관련하여 제출·접수한 서류 및 인·허가증. 다만,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.

여야 하며, 이를 스캔하여 전자화문서로 보관한 경우에는 문서 보관으로 갈음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.⁵⁾

□ 그런데, 「국세기본법」에서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, 동법 시행령 제46조⁶⁾에서만 ‘원본’의 범위에 전자화문서를 포함하고 있음.

또한,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는 ‘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’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 보관으로 문서 보관을 갈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, 「국세기본법」 상 ‘원본’을 종이문서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전자화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해석상 명확하지 아니함.

실제, 법령 중에는 ‘원본’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, 사업자 등은 ‘원본’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하여,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어 왔음.⁷⁾

참고로, 개정안은 정부 차원에서 법제처 주도로 ‘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법령정비 추진계획’⁸⁾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정부가 제

5)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(2022)」,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법제처, p.28

6)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6조(관계 서류의 열람신청) ① 법 제58조에 따라 이의신청,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에 동조(同調)하려는 자는 이를 구술로 해당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)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7) 전자문서를 종이문서로 별도로 출력하여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 전체 81.3%(의료 90.7%, 제조 83.8%, 공공 63.6%), 「2023 전자문서 이용실태조사」, KISA

8) 법령 정비의 주요 내용은 ①원본을 보관 또는 비치하도록 규정한 경우, 전자적 형태의 보관·비치로 가능함을 명

출한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을 비롯하여 총 4건의 법률이 개정 대상임.

[‘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법령정비 추진계획’에 따른 법률 목록]

구분	소관부처	법률	유형
1	기재부	국세기본법	②대조·확인
2	해수부	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	①보관·비치
3	금융위	담보부사채신탁법	①보관·비치 ②대조·확인
4	해수부	해상교통안전법	①보관·비치

자료: 법제처

□ 이에 개정안은 ‘원본’의 개념에 종이문서 외에 전자화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.

□ 첫째,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종이문서 관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둘째,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4조의2에서는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예외로 두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명확하게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면, ‘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’이 있어 전자문

확화, ②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,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·확인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임

서로의 갈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없애는 효과가 있을 것임.

문 의 처

02)6788-5147
